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64015 저작권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이재준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최자림, 우영은
변 론 종 결 2025. 9. 12.
판 결 선 고 2025.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1 기재 웹사이트 화면을 복제, 배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2 기재



웹사이트 화면 및 그 제작에 사용되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을 모두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인터넷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8. 20.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격회의(전화, 화상, 데이터) 서비스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2. 11.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

원고는 2020년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D, E 등 기업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이하 별지1 기재 웹사이트를 '원고 웹사이트'라 한다)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2005년경부터 국내 기업들에게 온라인 기업실적발표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22년경부터는 F 등 기업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이하 별지2 기재 웹사이트를 '피고 웹사이트'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 15, 16, 2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웹사이트는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화면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인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원고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요소, 즉 ① 화면의 구성을 랜딩 페이지-고객센터(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문의처)-사전등록(약관동의, 본인인증, 정보입력, 주주인증)-질문하기-시청하기 및 실시간 질문하기로 구성, ② 그중 사전등록 인증방법의 구성을 (i) 24시간 동안 유효한, (ii) 8자리 숫자의 인증번호를 사용, (iii) 인증화면에 '요청하지 않은 인증번호 메일을 받으셨나요?' 이하 안내 문구를 기재, ③ 사전등록 인증 이후 화면의 배열을 안내 문구-접속 코드-사전질문-질문접수 일정-온라인 중계 시청 가능 시간-유의사항 순서로 구성, ④ 그중 접속코드의 구성을 알파벳과 숫자가 혼합된 8자리로 구성, ⑤ 사전등록의 정보입력 단계에서 안내 문구를 화면 가운데 별도의 팝업으로 표시하는 구성을 각 포함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창작성이 드러나는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① 내지 ⑤의 원고 웹사이트 화면 구조, 내용 배치 등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원고 웹사이트에 표현된 오기, 띄어쓰기 형식 등이 그대로 존재하거나 피고가 원고의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의거성도 인정되는 피고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원고 웹사이트에 관한 원고의 저작물 복제권 및 전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2) 원고의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는 종래에 없던 서비스를 원고가 최초로 제공한 것으로, 원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원고 구성원들이 다년간 기업실적 발표 등을 위하여 웹사이트를 구성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기



술적 투자와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여 서비스 가치를 높이는 등 상당한 노력을 들여 주주총회의 성격에 맞고 효율적인 주주총회 중계가 이루어지도록 완성한 성과이고, 위 서비스를 구성하는 원고 웹사이트 또한 위 성과에 포함된다.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사전등록 절차를 두어야 하거나, 사전등록 절차가 반드시 원고 웹사이트 화면의 배열 및 구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성과는 자유로이 활용 가능한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를 제작·사용함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지, 폐기 청구 및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원고 웹사이트에서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성 있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원고 웹사이트에 관하여 주장하는 창작성 있는 부분은 유사한 서비스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유용한 기능 그 자체이거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 내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하게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 웹사이트가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웹사이트와 원고 웹사이트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이 없다.



2)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원고 웹사이트나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

3.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웹사이트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호증, 을가 제12 내지 14, 22, 25 내지 28,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웹사이트는 그 작성 행위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편집방식이 독창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물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하 각 페이지를 '화면 ○'로 특정한다).

순번	분류		별지1 화면 번호
1	랜딩 페이지		1, 2-1, 3-1-1, 9-1, 10-1
2	고객센터	1) 공지사항	2-2, 2-3
		2) 자주 묻는 질문	2-4, 2-5, 2-6, 2-7
		3) 문의처	2-8
3	사전등록	1) 약관동의	3-1-2
		2) 본인인증	4-1, 4-2, 5-1, 5-2, 6-1, 6-2, 7-1, 7-2, 8-1, 8-2
		3) 정보입력	4-3, 4-4, 4-5, 4-6, 4-7, 5-3, 5-4, 6-3, 6-4, 6-5, 6-6, 7-3, 7-4, 7-5, 8-3, 8-4, 8-5
		4) 주주인증	4-8, 4-9, 4-10, 5-5, 5-6, 5-7, 6-7, 7-6,



		7-7, 7-8, 8-6, 9-2, 9-3, 10-3, 10-4
4	질문하기	9-4, 9-5, 9-6, 9-7
5	시청하기 및 실시간 질문하기	10-2, 10-5, 10-6, 10-7, 10-8, 10-9, 10-10

나)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의 목적은 주주로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시청하면서 표결에 참여하거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 웹사이트 화면의 구성을 1. 랜딩 페이지, 2. 고객센터, 3. 사전등록, 4. 질문하기, 5. 시청하기 및 실시간 질문하기로 구성한 것은 위와 같은 서비스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적 순서에 따른 것이거나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출되는 통상적 배열로 위와 같은 구성에 편집자의 창작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체적으로 랜딩 페이지로 분류된 화면 1은 원고 웹사이트에 처음 접속하면 접하게 되는 화면으로 대표 이미지 우측 하단에 '메인바로가기' 아이콘이 위치해 있고, 화면 2-1, 3-1-1, 9-1, 10-1은 원고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① 전자투표, ② 사전등록, ③ 질문하기, ④ 주주총회시청의 4가지 세부 메뉴로 진입할 수 있는 아이콘이 2×2 배열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이다. 랜딩 페이지는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으로 진입하기 위한 화면으로, 위와 같은 대표 이미지 및 아이콘 배열은 그와 같은 필요 기능을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고객센터로 분류된 화면 2-2, 2-3은 '1) 공지사항' 페이지로 공지사항 분류, 제목, 날짜로 이루어져 있고, 화면 2-4 내지 2-7은 '2) 자주묻는 질문' 페이지로 질문 분류,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8은 '3) 문의처' 페이지로 문의처명과 문의 메일 주소



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고객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포함하는 기능적 구성요소에 불과하여 역시 그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마) 사전등록으로 분류된 화면 3-1-2는 '1) 약관동의' 페이지로 주주총회 온라인 중계 서비스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안내, 주주확인에 관한 것이고, 화면 4-1, 4-2, 5-1, 5-2, 6-1, 6-2, 7-1, 7-2, 8-1, 8-2는 '2) 본인인증' 페이지로 주주의 구분(개인, 법인), 나이(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 방법(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외국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인증 없이 진행하는 경우의 안내 팝업을 표시하고 있다. 화면 4-3, 4-4, 4-5, 4-6, 4-7, 5-3, 5-4, 6-3, 6-4, 6-5, 6-6, 7-3, 7-4, 7-5, 8-3, 8-4, 8-5는 '3) 정보입력' 페이지로 주주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입력하는 화면, 입력 결과에 따라 인증번호 발송 또는 인증번호 불일치 안내 팝업, 인증완료 팝업이 표시되며, 화면 4-8, 4-9, 4-10, 5-5, 5-6, 5-7, 6-7, 7-6, 7-7, 7-8, 8-6, 9-2, 9-3, 10-3, 10-4는 '4) 주주인증' 결과에 관한 안내 페이지로, 위 '2) 본인인증' 및 '3) 정보입력'의 입력 값이 회사 보유 주주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이미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안내 페이지이다.

위와 같은 사전등록 화면은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을 위해 관련 법상 동의가 요구되는 약관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진정한 주주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화면으로 역시 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화면에 해당하고, 여기에 저작자의 창작성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석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예정하는



각종 회의, 세미나 등 관련 웹사이트들도 참가자 식별 및 접속 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전등록 절차를 두고 있고, 주주총회의 표결 참석 등 또한 주주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프라인에서 실제 주주총회가 진행되는 동시에 온라인으로 이를 중계하여 주주들이 원격으로 참석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질의나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개시 이전에 위와 같은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 주주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등록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을 두고 기능상의 유용성을 넘어 원고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전등록 인증방법의 구성을 (i) 24시간 동안 유효하게 하고, (ii) 8자리 숫자의 인증번호를 사용하며, (iii) 인증화면에 '요청하지 않은 인증번호 메일을 받으셨나요?' 이하 안내 문구를 선택하거나, 정보입력 단계의 안내 문구를 화면 가운데 별도의 팝업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은 본인인증 절차가 요구되는 다수의 사이트에서 이용하고 있는 방식이거나 웹사이트 개설 목적에 따라 취사선택이 가능한 요소에 불과하고, 안내 문구가 팝업으로 중앙에 표시되는 것도 누구나 같거나 유사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역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질문하기로 분류된 화면 9-4, 9-5, 9-6, 9-7은 질문구분(배당금 관련,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임원 보수의 건)에 따라 사전 질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질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유용한 기능에 해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독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시청하기 및 실시간 질문하기로 분류된 화면 10-2, 10-5, 10-6, 10-7, 10-8, 10-9, 10-10는 주주총회시청 버튼을 클릭하면 주주총회 시청 시간이 아닌 경우 이를



안내하는 팝업을 띄우고, 시청 시간인 경우 사전등록 결과 수신한 접속코드를 입력하도록 하여 사전등록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전등록에 관한 안내 팝업을 띄우며, 사전등록된 사용자의 경우 주주총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주총회 시청 중 사전에 등록한 질문을 질문구분 및 질문 내용에 따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구분에 따라 실시간 질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시청하면서 표결에 참여하거나 질의를 하는 등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고 웹사이트의 목적 상 필요한 기능으로,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된 것에 불과하거나 그 편집방침에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여전히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때 수신한 접속코드의 구성을 알파벳과 숫자가 혼합된 8자리로 구성한 것은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적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고, 네이버, 카카오 등 다른 주요 온라인 서비스들도 이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웹사이트는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



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등 참조).

2) 원고 웹사이트가 피고 웹사이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주장하는 구성 등은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기준으로 피고 웹사이트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대비할 수 없고, 아래에서 대비하는 것과 같이 원고 웹사이트와 피고 웹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보기도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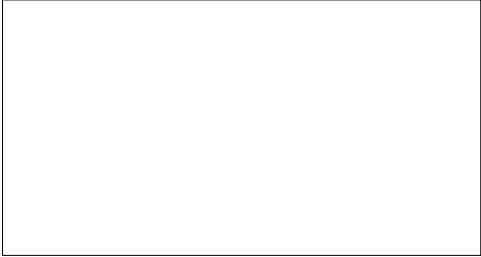

원고 웹사이트와 피고 웹사이트를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가) 랜딩 페이지 화면

원고 웹사이트	피고 웹사이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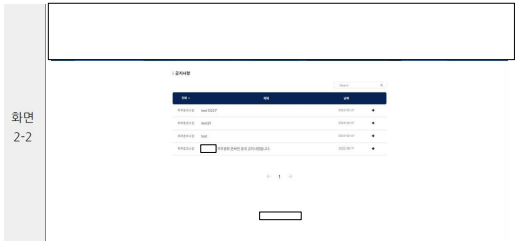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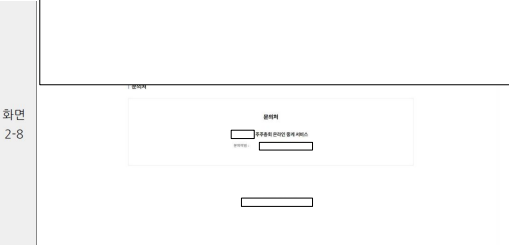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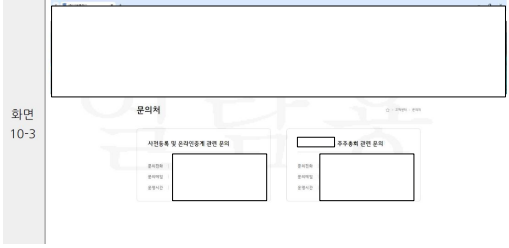
<p>화면 1</p> 	<p>화면 1</p> 
<p>화면 2-1</p> 	<p>화면 2</p> 

원고와 피고 웹사이트의 랜딩 페이지 화면은 바탕화면의 색상이 남색과 진초록색으로 다르고, 메인페이지로 진입하기 위한 아이콘 구성이나 사전등록을 위한 팝업 내지 아이콘 배치도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사전등록을 위한 안내 문구는 사전등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고객센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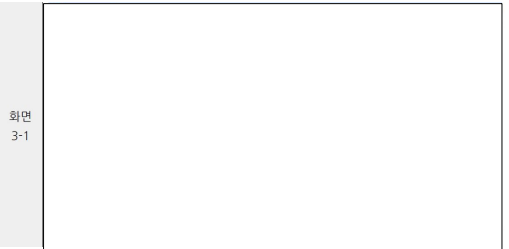
	원고 웹사이트	피고 웹사이트
<p>공지사항</p> <p>화면 2-2</p>		<p>화면 10-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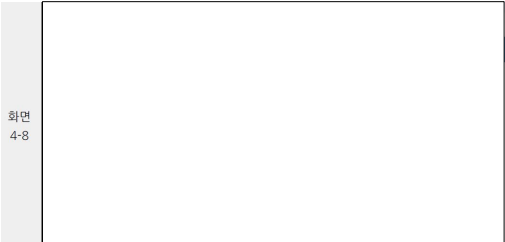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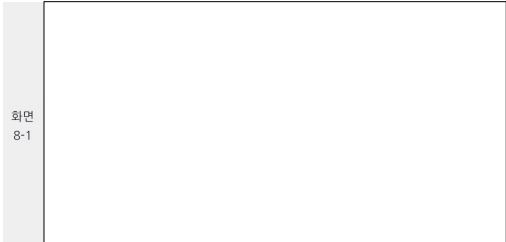
<p>자주 묻는 질문</p>	<p>화면 2-4</p> 	<p>화면 10-2</p> 
<p>문의처</p>	<p>화면 2-8</p> 	<p>화면 10-3</p> 

원고와 피고 웹사이트의 고객센터 화면은 게시판의 명칭이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문의처'로 동일하고 그 구성요소도 유사하나, 그와 같은 공통점은 온라인 주주 총회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웹사이트가 웹사이트의 개설 목적에 따른 각 게시판의 명칭을 구성함에 있어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에 해당한다.

다) 사전등록 화면

	원고 웹사이트	피고 웹사이트
<p>약관동의</p>	<p>화면 3-1</p> 	<p>화면 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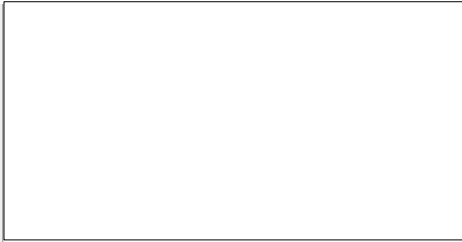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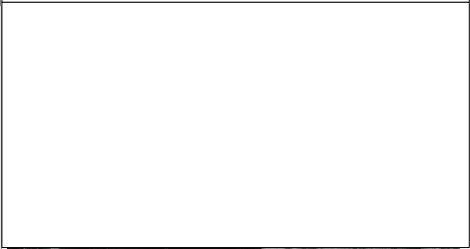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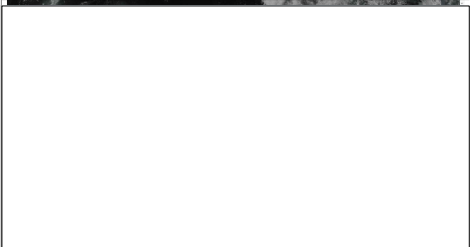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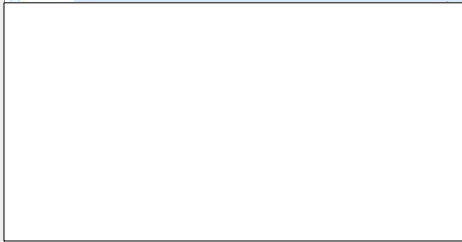
본인인증	화면 4-2 	화면 4-3 
정보입력	화면 4-3 	화면 4-6 
주주인증	화면 4-8 	화면 8-1 

원고와 피고 웹사이트의 사전등록 화면의 '약관동의'는 원고 웹사이트는 동의 여부 확인란 아래에 약관 전문을 그대로 표시하는 반면, 피고 웹사이트는 '약관보기'를 클릭하여야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인증화면 중 인증번호 8자리의 경우 원고 웹사이트는 8자리의 연속된 숫자로 이루어진 반면, 피고 웹사이트는 4자리의 연속된 두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요청하지 않은 인증번호 메일을 받으셨나요?' 하단의 안내문구의 경우, 원고 웹사이트는 '내 메일 계정이 맞다면, 누가 오타로



메일을 발송했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은 아니니 안심하세요.'라고 기재한 반면, 피고 웹사이트는 '타인의 입력 실수로 본 이메일을 수신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반면, 본인인증, 정보입력, 주주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거나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주주인증을 위한 것으로 기능이 동일할 뿐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질문하기 화면

	원고 웹사이트	피고 웹사이트
<p>사전 질문하기</p>	<p>화면 9-4</p> 	<p>화면 11-1</p> 
	<p>화면 9-5</p> 	<p>화면 11-2</p> 
	<p>화면 9-6</p> 	<p>화면 11-3</p> 
	<p>화면 9-7</p> 	



실시간 질문하기		
-------------	--	--

원고와 피고 웹사이트의 질문하기 화면은 질문구분 등을 포함하는 질문하기 화면으로 진입하기 위한 방법, 질문하기 화면의 전체적인 구성, 질문등록의 구성형식이 상이하고, 단지 질문하기의 기능만이 동일할 뿐인데 이와 같은 기능은 온라인 주주총회 참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요소이다.

라) 시청하기 화면

원고 웹사이트	피고 웹사이트

원고와 피고 웹사이트의 시청하기 화면은 배경화면 및 화면 상단의 제목 이미지가 상이하고, 화면 중앙에 주주총회 동영상에 표시되는 점이 동일하나, 이는 시청하기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이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전등록 결과 수신한 접속코드의 경우 원고는 숫자와 알파벳이 조합된 8자리 코드를 사용한 반면, 피고는 숫자와 알파벳이 조합된 8자리 코드를 4자리씩 하이픈(-)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웹사이트와 피고 웹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웹사이트가 원고 웹사이트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9 내지 21, 29, 33,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 웹페이지는 고객사인 각 주식회사들의 구체적 요청사항에 따라 제작되고, 이 과정에서 개별 안내 문구의 내용과 세부적 디자인 요소가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를 참조하였거나 원고 내부 기획안을 입수하여 피고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데에 활용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도 2021년경부터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사와 협의하며 피고 웹사이트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시한 원고 웹사이트와 피고 웹사이트의 유사성은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라는 웹페이지의 기능상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동일한 띄어쓰기나 오타자 등은 고객사가 제공한 약관에 의한 것이거나 사소한 부분에 불과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웹사이트가 원고 웹사이트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과목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과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 4, 7, 19 내지 21, 29, 30,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웹사이트는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사전등록, 질문하기, 시청하기 및 실시간 질문하기 등의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웹사



이트가 다른 주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와 구별되는 고유한 개성을 가져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대표자 사내이사 G는 2011. 6. 13.부터 2015. 6. 19.까지 피고 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차장으로 퇴직한 사람이고, 원고 영업팀 이사인 H은 2008. 3. 26.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 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과장으로 퇴직한 사람인데, 위 사람들이 퇴사 이후 원고를 설립하였고, G가 2016. 5.경 I, J, E 등에 피고에서 이직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원고 서비스를 이용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④ 원고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주체들과는 달리 원고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특히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웹사이트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웹사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반면, 이를 원고의 독점적 권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웹사이트가 원고 웹사이트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 웹사이트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아이디어 정보 또는 성과 등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찬

 판사 정지백

 판사 정명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별지1]

○ 원고 웹사이트 화면

<p>화면 1</p>	
<p>화면 2-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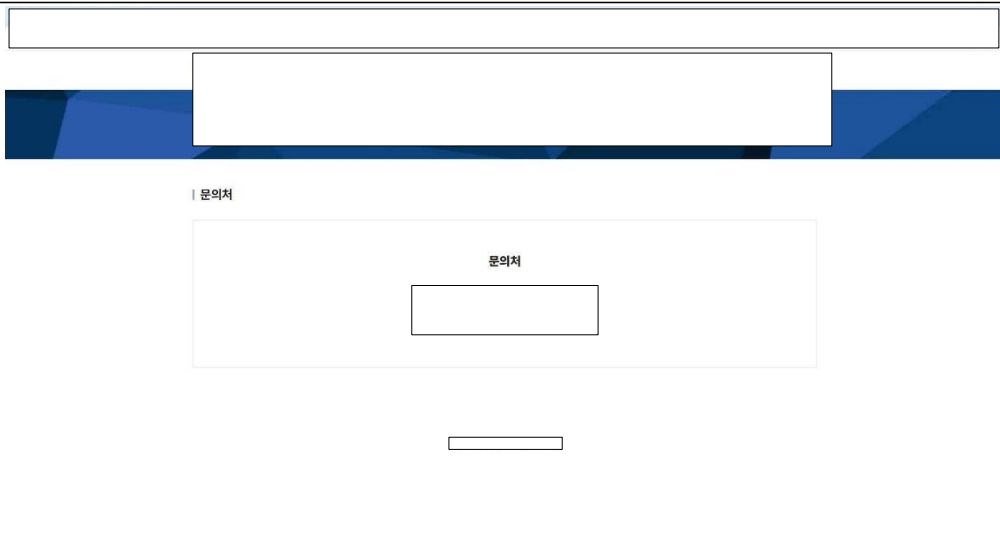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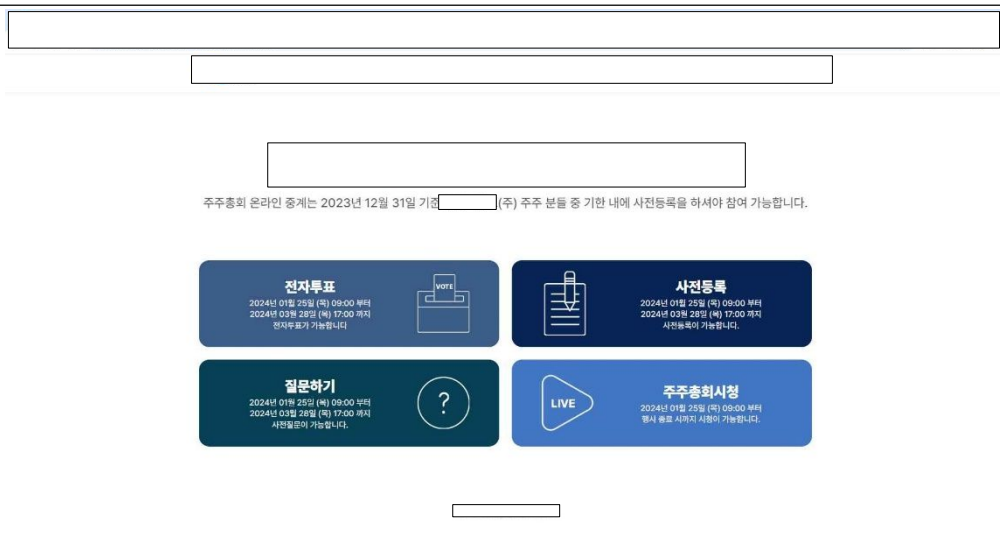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2-5</p>	
<p>화면 2-6</p>	
<p>화면 2-7</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2-8</p>	
<p>화면 3-1-1</p>	
<p>화면 3-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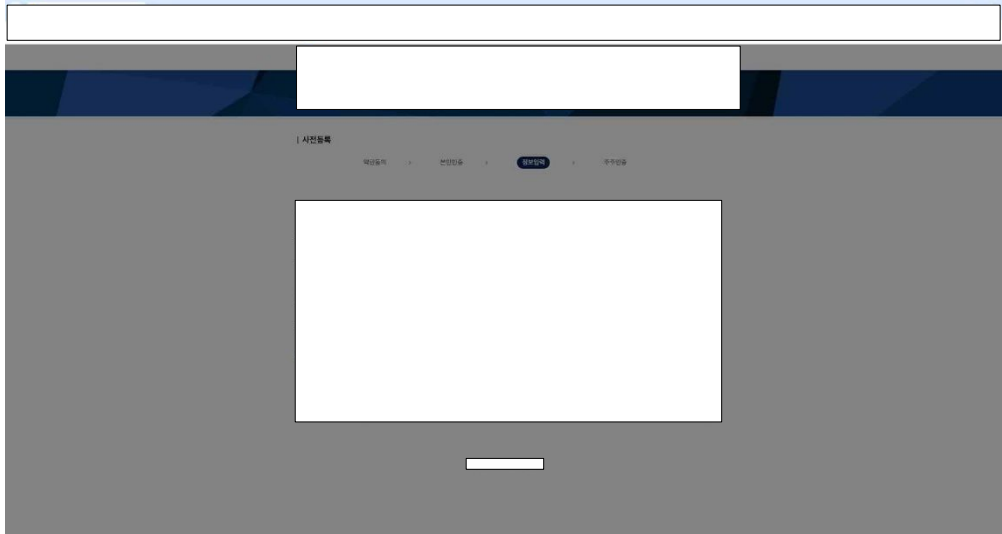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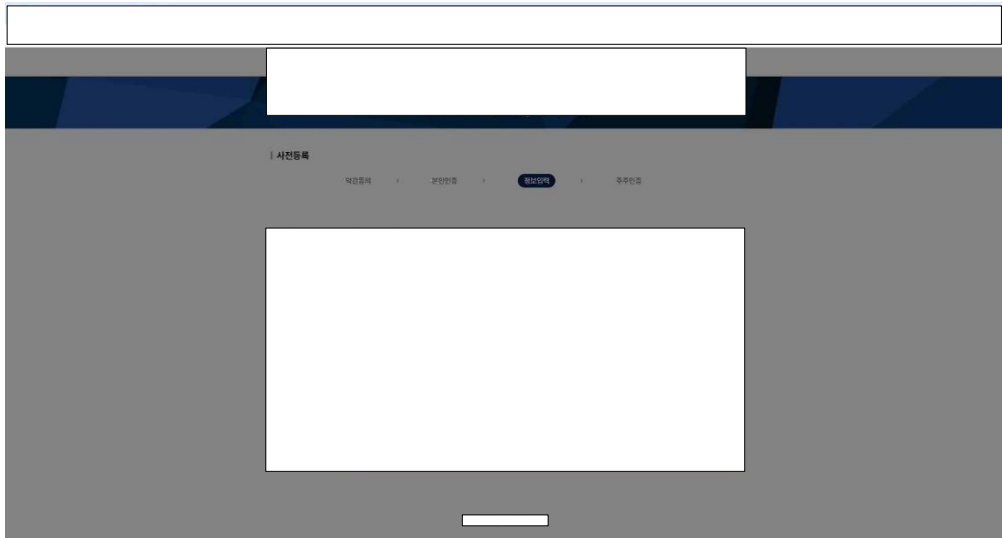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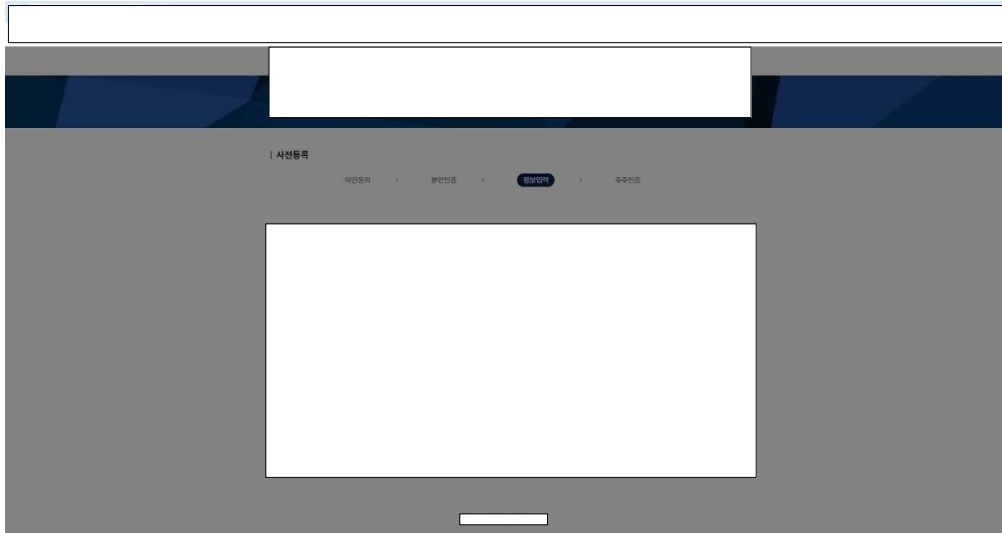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화면 4-1	
화면 4-2	
화면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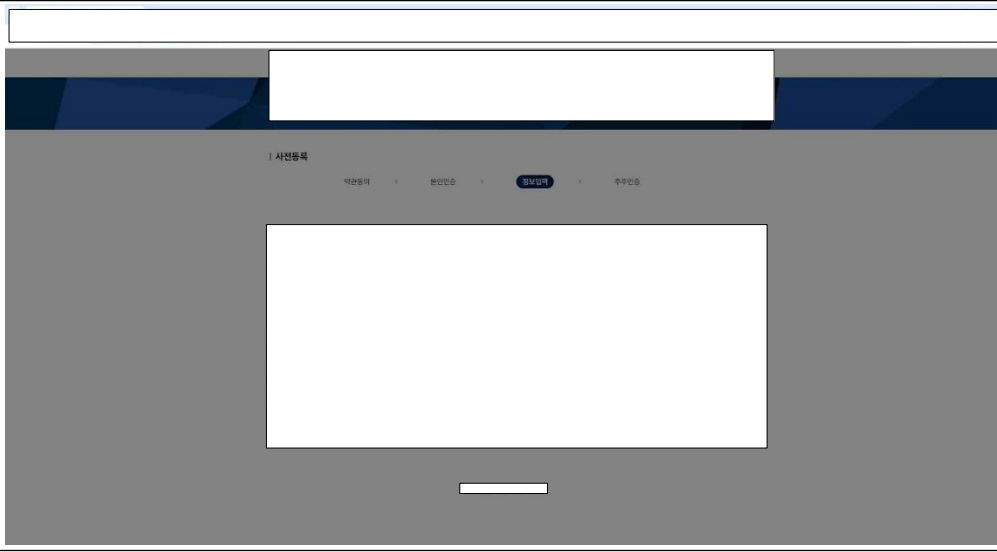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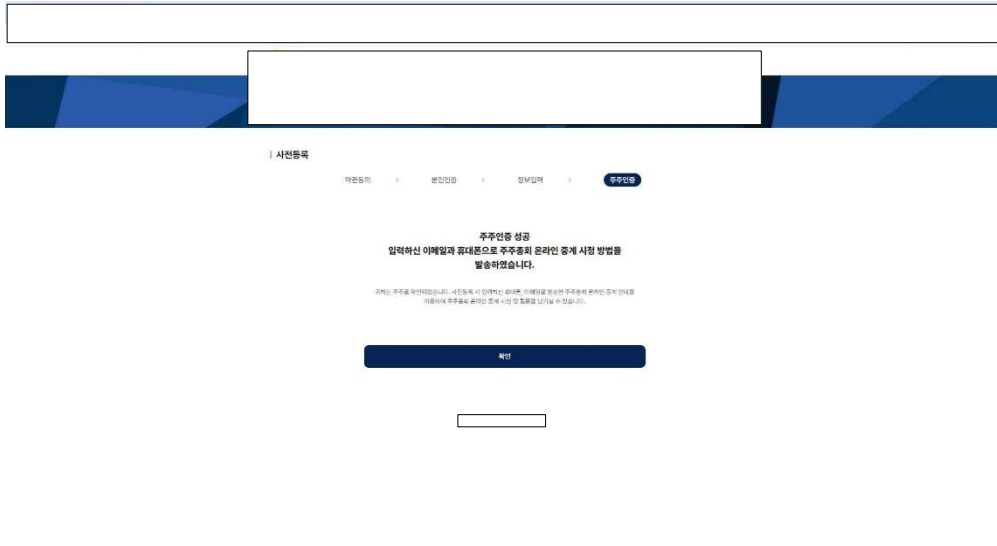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화면 4-4	
화면 4-5	
화면 4-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4-7</p>	
<p>화면 4-8</p>	
<p>화면 4-9</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4-10</p>	
<p>화면 5-1</p>	
<p>화면 5-2</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5-3</p>	
<p>화면 5-4</p>	
<p>화면 5-5</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5-6</p>	
<p>화면 5-7</p>	
<p>화면 6-1</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6-2</p>	
<p>화면 6-3</p>	
<p>화면 6-4</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화면 6-5	
화면 6-6	
화면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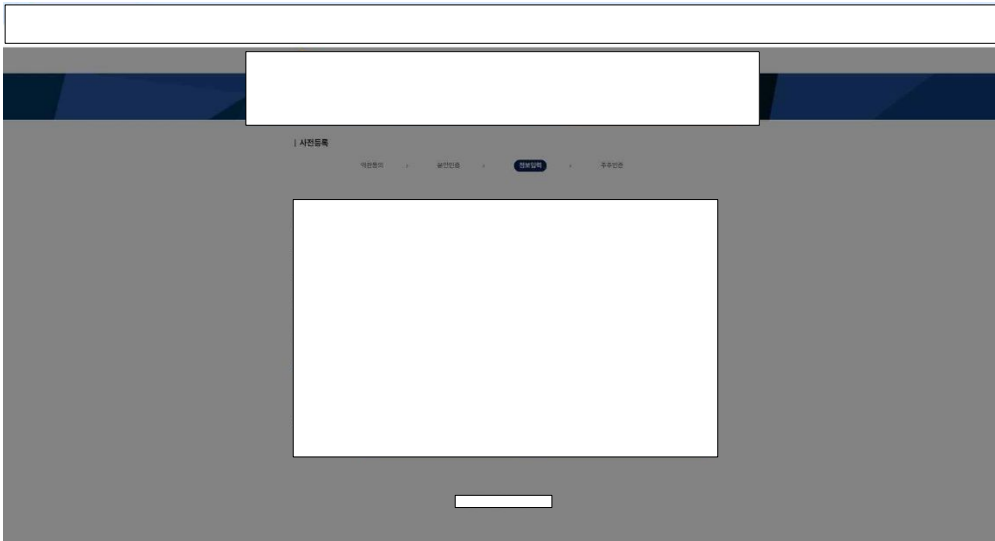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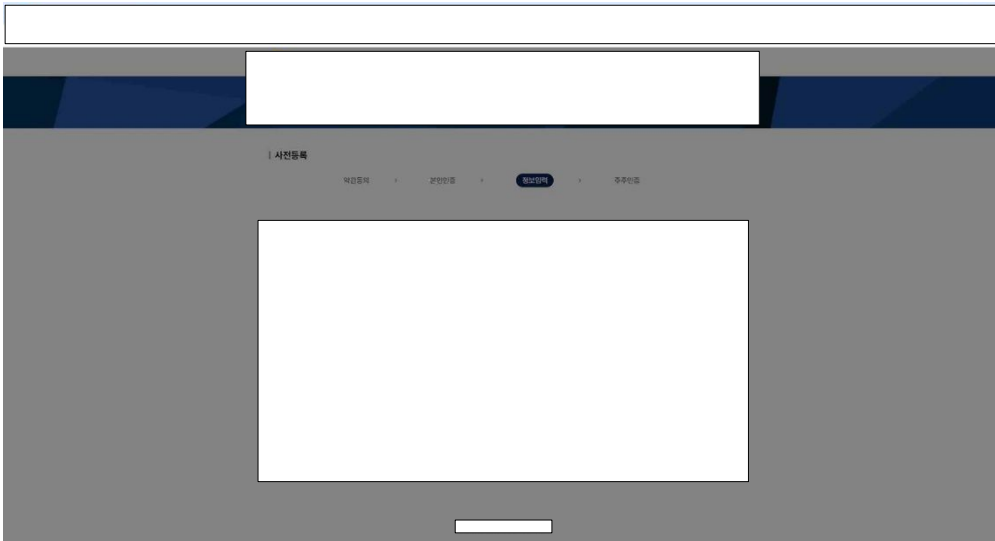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7-1</p>	
<p>화면 7-2</p>	
<p>화면 7-3</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7-4</p>	
<p>화면 7-5</p>	
<p>화면 7-6</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7-7</p>	
<p>화면 7-8</p>	
<p>화면 8-1</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8-2</p>	
<p>화면 8-3</p>	
<p>화면 8-4</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8-5</p>	
<p>화면 8-6</p>	
<p>화면 9-1</p>	



<p>화면 9-2</p>	
<p>화면 9-3</p>	
<p>화면 9-4</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9-5</p>	
<p>화면 9-6</p>	
<p>화면 9-7</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10-1</p>	
<p>화면 10-2</p>	
<p>화면 10-3</p>	<p>점속코드확인</p> <p>점속코드를 입력하세요.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입장"/></p> <p><input type="checkbox"/> 주주총회 온라인 출제 사전등록을 통해 수선하신 안내 페이지나 안내 문자에 포함된 점속코드를 입력하세요.</p> <p>시청 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주주총회 온라인 출제 서비스는 주주 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2024년 03월 29일 (금) 10:00에 개시되는 제 10기 <input type="text"/> 정기주주총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이며, 이와 따라 사전등록을 하신 후유발만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본 주주총회 온라인 출제 서비스는 정기주주총회 당일 실시간이 아닌 사전에 반영되는 경우 인디카 생중계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으며 동시에 많은 접속자 유입으로 인해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주주총회 온라인 출제 서비스는 주주회원 전용 서비스로, 실시간 방송에는 영상은 당사에게 권리가 있으며 당사에게 할부, 녹화, 사전 촬영 등을 저지나 적절치 않게 시연(또는 SNS)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 주주총회 온라인 출제 서비스는 주주회원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실시간 중계되는 영상은 당사에게 권리가 있으며 당시의 촬영 없이 캡처, 녹화, 사전 촬영 등을 하거나 촬영하여 다른 사이트(또는 SNS)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 주주총회 온라인 출제 시청은 상점상 제 10기 <input type="text"/> 정기주주총회의 출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상점 384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10-4</p>	
<p>화면 10-5</p>	
<p>화면 10-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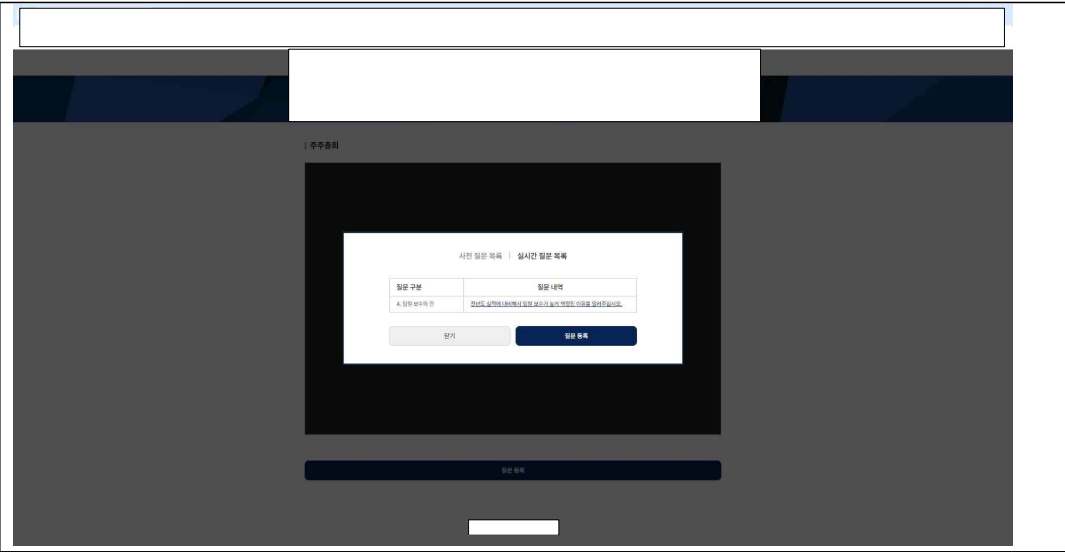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10-7</p>	
<p>화면 10-8</p>	
<p>화면 10-9</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화면 10-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별지2]

○ 피고 웹사이트 화면

<p>화면 1</p>	
<p>화면 2</p>	
<p>화면 3-1</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4-1</p>	
<p>화면 4-2</p>	
<p>화면 4-3</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4-4</p>	
<p>화면 4-5</p>	
<p>화면 4-6</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5-1</p>	
<p>화면 5-2</p>	
<p>화면 5-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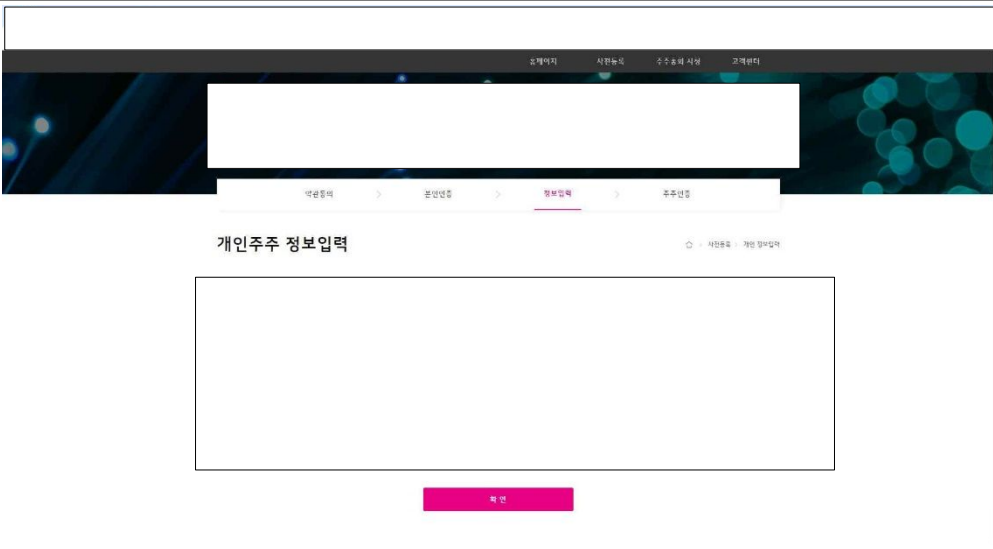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6-1</p>	
<p>화면 6-2</p>	
<p>화면 7-1</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7-2</p>	
<p>화면 7-3</p>	
<p>화면 8-1</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9-1</p>	
<p>화면 9-2</p>	
<p>화면 9-2</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9-3</p>																																		
<p>화면 10-1</p>	<table border="1"> <thead> <tr> <th>전체</th> <th>제목</th> <th>날짜</th> </tr> </thead> <tbody> <tr> <td>서비스이용</td> <td>주주총회 권리인 중지 안내</td> <td>2024-03-01</td> </tr> <tr> <td>서비스이용</td> <td>전자투표제도 안내</td> <td>2024-03-01</td> </tr> <tr> <td>서비스이용</td> <td>백종관 대리행사 안내</td> <td>2024-03-01</td> </tr> </tbody> </table>	전체	제목	날짜	서비스이용	주주총회 권리인 중지 안내	2024-03-01	서비스이용	전자투표제도 안내	2024-03-01	서비스이용	백종관 대리행사 안내	2024-03-01																					
전체	제목	날짜																																
서비스이용	주주총회 권리인 중지 안내	2024-03-01																																
서비스이용	전자투표제도 안내	2024-03-01																																
서비스이용	백종관 대리행사 안내	2024-03-01																																
<p>화면 10-2</p>	<table border="1"> <thead> <tr> <th>전체</th> <th>제목</th> <th>날짜</th> </tr> </thead> <tbody> <tr> <td>사전등록</td> <td>사전등록서 간접인용 방지 조치 안내사항</td> <td>2024-03-01</td> </tr> <tr> <td>사전등록</td> <td>증권거래처 정보 제공 공백 발생 시 조치 안내사항</td> <td>2024-03-01</td> </tr> <tr> <td>사전등록</td> <td>공정방송 중 개입유무 민원해지 조치 안내사항</td> <td>2024-03-01</td> </tr> <tr> <td>사전등록</td> <td>민원명세서 기재일부 조치 안내사항</td> <td>2024-03-01</td> </tr> <tr> <td>사전등록</td> <td>주주명단 후 입사카드 기재일부 조치 안내사항</td> <td>2024-03-01</td> </tr> <tr> <td>사전등록</td> <td>일부주주 명사예외를 다시 안내 드립니다. 기재할 주소를 변경하기 전엔별 수 있습니다</td> <td>2024-03-01</td> </tr> <tr> <td>서비스이용</td> <td>민사소송기록(사건번호) 제공이 가능한지?</td> <td>2024-03-01</td> </tr> <tr> <td>서비스이용</td> <td>법원기록정보 검색 시 주주명단 권리인 검색 서비스 활성화가 불가한지?</td> <td>2024-03-01</td> </tr> <tr> <td>서비스이용</td> <td>한 1차 지원 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td> <td>2024-03-01</td> </tr> <tr> <td>서비스이용</td> <td>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을 알려 드립니다.</td> <td>2024-03-01</td> </tr> </tbody> </table>	전체	제목	날짜	사전등록	사전등록서 간접인용 방지 조치 안내사항	2024-03-01	사전등록	증권거래처 정보 제공 공백 발생 시 조치 안내사항	2024-03-01	사전등록	공정방송 중 개입유무 민원해지 조치 안내사항	2024-03-01	사전등록	민원명세서 기재일부 조치 안내사항	2024-03-01	사전등록	주주명단 후 입사카드 기재일부 조치 안내사항	2024-03-01	사전등록	일부주주 명사예외를 다시 안내 드립니다. 기재할 주소를 변경하기 전엔별 수 있습니다	2024-03-01	서비스이용	민사소송기록(사건번호) 제공이 가능한지?	2024-03-01	서비스이용	법원기록정보 검색 시 주주명단 권리인 검색 서비스 활성화가 불가한지?	2024-03-01	서비스이용	한 1차 지원 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2024-03-01	서비스이용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2024-03-01
전체	제목	날짜																																
사전등록	사전등록서 간접인용 방지 조치 안내사항	2024-03-01																																
사전등록	증권거래처 정보 제공 공백 발생 시 조치 안내사항	2024-03-01																																
사전등록	공정방송 중 개입유무 민원해지 조치 안내사항	2024-03-01																																
사전등록	민원명세서 기재일부 조치 안내사항	2024-03-01																																
사전등록	주주명단 후 입사카드 기재일부 조치 안내사항	2024-03-01																																
사전등록	일부주주 명사예외를 다시 안내 드립니다. 기재할 주소를 변경하기 전엔별 수 있습니다	2024-03-01																																
서비스이용	민사소송기록(사건번호) 제공이 가능한지?	2024-03-01																																
서비스이용	법원기록정보 검색 시 주주명단 권리인 검색 서비스 활성화가 불가한지?	2024-03-01																																
서비스이용	한 1차 지원 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2024-03-01																																
서비스이용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2024-0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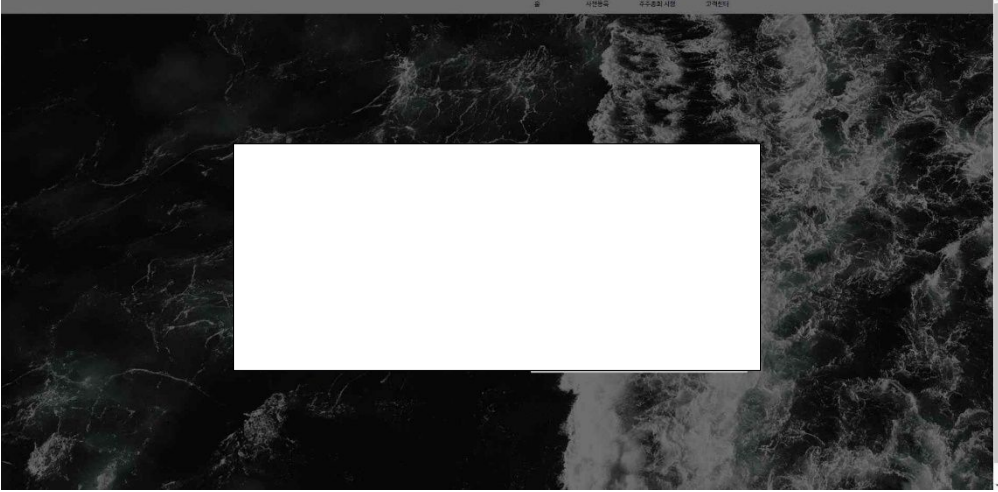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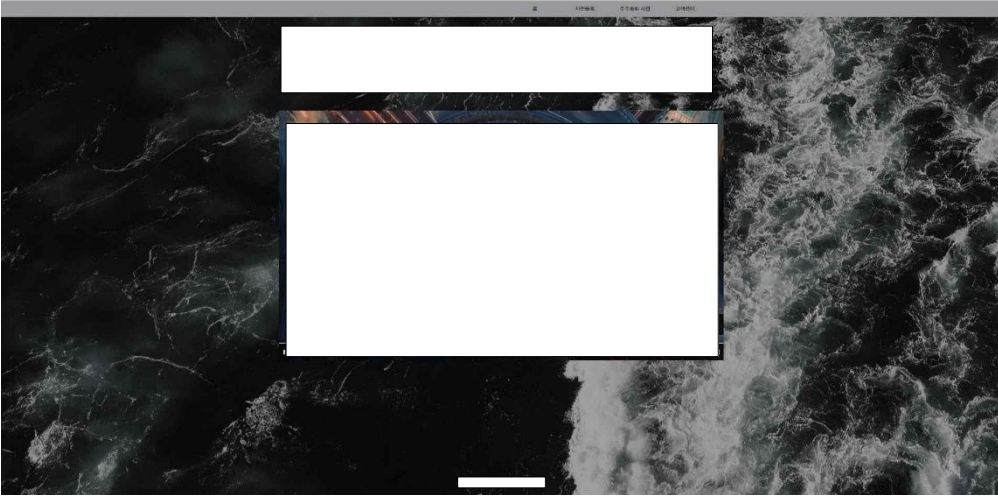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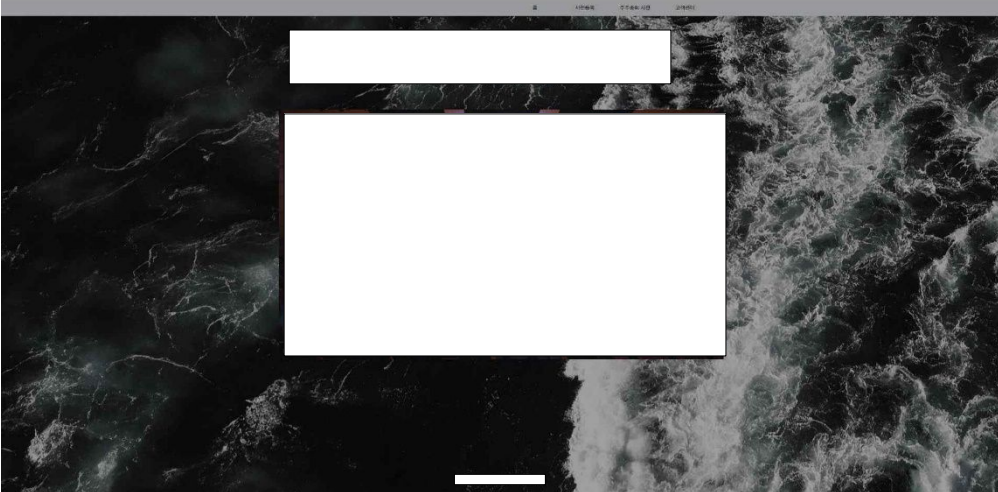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p>화면 10-3</p>	
<p>화면 11-1</p>	
<p>화면 11-2</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화면 11-3	
화면 12-1	
화면 12-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9

화면
12-3

